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시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51
----------	------

발의년월일 : 2021. 04. 02.

발의의원 : 이시복 의원
강민구 의원
김대현 의원
김성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원규 의원
박우근 의원
배지숙 의원
송영헌 의원
윤기배 의원
이영애 의원
이태손 의원
전경원 의원
정천락 의원
하병문 의원
홍인표 의원

1. 제안이유

- 「위생용품 관리법」, 「외식산업 진흥법」 및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관련업종을 추가하고,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외식산업 진흥법」 및 「식품산업진흥법」상의 관련업종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 제6조)
- 라.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마. 위생관련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 다. 기 타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관련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2조,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4.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 및 단체”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관련 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5. “외식산업 영업자 및 단체”란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산업 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6. “식품산업 사업자단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
2.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
3. 위생업과 관련되는 대학 또는 대학교
4.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협회
5.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 및 단체
6. 외식산업 영업자 및 단체
7.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8. 그 밖에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업소·단체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위생관련업의 시설·환경개선
2. 위생관련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경기·경연대회
3. 위생관련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전시회, 박람회 및 축제 개최
4. 위생관련 교육 및 국·내외 견학
5. 식품안전성 확보 또는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6.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7. 위생관련업 육성 및 역량강화
8. 위생관련업 일자리 알선·지원
9. 위생관련 홍보 및 마케팅
10. 위생관련업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평가
11. 그 밖에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조요청) 시장은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위생관련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營業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營業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營業을 말한다.
 - 가.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營業
 -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 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營業

-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라. 화장·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18. 3. 13.>
8. 삭제 <2018. 3. 13.>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기숙사

-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다. 병원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마. 산업체
 -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 라. 기타 위생용품
 -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ナイ프·빨대
 -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3) 일회용 이쭝시개·면봉·기저귀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 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위생용품수입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 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4조(영업자단체의 설립) ① 영업자는 해당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영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수입·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외식사업”이란 외식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5. “외식사업자”란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단체) ① 외식사업자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지도·감독·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외식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2.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
3.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4. 외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 2의4.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7. “우수식품등인증”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법제 및 재정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